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식품 서비스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었을 경우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월요일 기준

목적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식품 서비스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Manufacturing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은 식품 서비스 사업체의 소유자/운영자, 직원 및 하청계약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푸드 트럭 및 기타 음식 매점업 포함한 모든 식당 및 음식 서비스 시설에 적용됩니다. 재개 1 단계에 있거나 2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시설이 테이크아웃 및 배송을 통해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재개 2 단계에 도달한 지역에서는, 고객이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은 고객용 좌석을 구비한 야외 공간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예: 식당 및 바 실내 공간은 고객에게 개방할 수 없음). 재개 1 단계 및 2 단계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를 위한 야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뉴욕주 보건부(DOH)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야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음식에 대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Outdoor and Take-Out/Delive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을 참조하십시오.

재개 3 단계에 도달한 지역에서는, 고객이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 지침에 따라 고객용 좌석을 구비한 실내 및 야외 공간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 좌석이 구비된 식당은 고객이 적절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착석할 수 있는 구역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공간의 식탁 또는 바 탑에 착석한 경우에만 식당 실내에서 음식 및/또는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이며 모든 고용주는 추가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발행 당시 가장 잘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따르며, 본 지침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는 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이를 음식 서비스 운영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미국 식품 의약국(FDA) 및 미국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SHA)은 코로나 19가 음식을 통해 전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식품 서비스 시설에 대한 뉴욕주 위생법 및 본 지침의 일부로 명시된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 코로나 19에 대해 충분히 보호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를 발령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 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의 식음료 시설의 모든 구내에서 음식과 음료의 소비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 202.3 호를 선포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게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 호를 선포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 호를 선포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17 호를 선포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 202.18 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에게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 202.34 를 선포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재개 2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3일 Cuomo 주지사는 주정부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식당의 야외 식사를 재개 2 단계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6월 12일 재개 3 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기준 외에도 사업체는 DOH가 공표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및 지시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 주정부에서 발행한 다른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 최신 지침이 적용됩니다.

뉴욕주의 책임지는 음식 서비스 기준

미국 장애인법(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환경 보호국(EPA) 및 미국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SHA)의 해당 최소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용 가능한 연방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최소 주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음식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음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음식 서비스 현장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어느 경우든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진행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본 지침의 목적 상 "야외 공간"은 음식 및/또는 음료의 소비를 위해 지정된 야외 공간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임시 또는 고정 커버(예: 천막 또는 지붕)가 공기 흐름을 위해 최소한 두 개의 열린 면이 있는 한 그러한 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 공간에서 좌석이 있는 모든 식탁은 다른 식탁, 좌석, 고객 또는 보행자 도로 또는 복도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바 또는 레스토랑이 행정 명령 202.38 호에 따라 인접한 공공 장소(예 : 보도)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자치 단체는 그러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보도의 보행자 통행량, 보도 공간의 이용 가능 여부 및 불필요한 혼잡 방지를 고려하여 보행자 도로 또는 복도로부터 식탁을 대안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거나, 지방 자치 단체는 식탁과 보행자 도로 또는 복도 사이 간격이 6 피트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바 또는 레스토랑이 높이가 5 피트 이상인 물리적 장벽을 세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을 제외한 점유 인원 수 증명서에 의해 설정된 특정 구역의 최대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실내 수용 인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핵심 활동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요리, 청소, 식탁 치우기, 유지관리)가 아닌 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 간에 항상 최소 6 피트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이 항상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은 착석한 동안을 제외하고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2 세 미만이며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코로나 19 에 대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과 안면 가리개 및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가리개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PE)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한 안면 가리개는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업계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PPE 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식탁이 다른 식탁에서 최소 6 피트 간격이 유지되도록 안전하고 적절하게 배열될 수 있는 식탁 수에 맞춰 실외 수용 인원 수를 제한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을 위한 좌석이 있는 실내 및 실외 식탁이 모든 방향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식탁 간에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식탁 간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리적 장벽의 높이는 5 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비상구 및/또는 화재 비상구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단체 고객들(예: 고객 그룹) 간 최소 6 피트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고객이 실내 및 실외 바 구역에 앉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하면 바 구역 직원이 서로 및/또는 고객 간에 최소 6 피트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탁당 최대 10 명 한도로 식탁이 허용하는 한 다수의 개인을 단일 식탁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 한 식탁에 동석한 개인은 반드시 동일한 단체의 일행이어야 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 여러 단체 손님이 동일한 대형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공동 식탁은 단체 고객 사이에 6 피트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고객에게 화장실을 사용을 허용하는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내에서 그리고 화장실을 기다리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용을 수정하고/하거나 작업대 및 직원 좌석 영역의 수를 제한하여 직원들이 모든 방향(예: 좌우로 나란히 그리고 서로 마주 보는 경우)에서 6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매 사용 시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작업대를 공유해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예: 픽업 스테이션, 금전 등록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방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 물리적 장벽(예: 플라스틱 차폐 벽)을 배치할 수 있으며 비상구 및 화재 비상구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글라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분할기 또는 칸막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시에 해당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예: 냉동 창고 또는 창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더라도 한 명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해당 공간의 최대 수용 인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최대한 환기(예: 주방의 창문과 문을 열어 뚫)하여 환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 화살표가 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및 일반적으로 줄서기가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예: 출퇴근 시간 기록대, 의료 선별검사대, 휴게실) 모든 영역에서 6 피트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6 피트 거리두기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고객이 주문, 음식 픽업, 착석 또는 화장실 사용을 기다리는 모든 줄서기(예: 테이프 또는 기타 동등한 수단 사용). 및
 - 모든 픽업 또는 지불 장소(예: 카운터, 식탁, 레지스터)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하면 고객의 출입구와 직원의 출입구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음식을 픽업할 준비가 되거나 착석할 준비가 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밖에서 기다리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원격 주문을 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비접촉식 주문, 지불, 배송 그리고 픽업 및/또는 커브사이드 픽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 비접촉식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지폐 사용을 최소화하고 종이 영수증만 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착석하기 전에 사전 주문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곳곳에 DOH COVID-19 표지판과 일치하는 게시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하는 경우 직장 또는 환경에 따라 고유한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사용하여 직원과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 코나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덮으십시오.
- PPE 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 19 의 증상 또는 이에 대한 노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하십시오.
- 손 위생, 청소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직원 모임(예: 직원 회의)을 제한하고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 회의 또는 원격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회의를 통풍이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개최하고 직원들이 서로 6 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함을 확인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의자를 하나 걸러 앉으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비필수 편의 시설 및 사람들이 모이기 쉽거나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 구역(예: 자동 판매기, 공동 커피 자판기)를 폐쇄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소규모 구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관행을 구현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유 인원 수를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 게시 및 제도(예: 점유 시 표시)를 개발해야 합니다.
 -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사례를 이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이 모임(예: 휴식, 식사 및 교대 시작/정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즉, 6 피트 공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C. 작업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원으로만 인원 제한.
 - 작업장 개장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감원.
 - 계획 변경(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에 시차를 둠).
 -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과제를 그렇지 않은 과제에 비해 더 우선 순위를 둠.
 - 예정된 작업 시간에 시차를 두고 사용 중인 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통해 한 구역에 복수의 직원 및/또는 팀이 모이는 것을 피함. 및/또는
 - 가능한 경우 활동을 분할하거나 함께 묶어서 개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동시에 장비에 손이 접촉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음.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적절하게 청소 및/또는 소독하지 않는 한, 음식 준비 직원이 교대 중 다른 직원의 작업장을 변경하거나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웨이터/웨이트리스의 개별 작업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웨이터/웨이트리스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의 특정 영역에서 서빙을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의 좌석 예약을 권장하여 착석 및 서빙을 기다리며 고객이 모이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기기(예: 버저)를 제공하여 좌석이나 주문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단, 매년 사용할 때마다 기기를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문이나 착석을 기다리는 고객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음성 안내, 문자 메시지 또는 화면상 알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공급업자 픽업 및/또는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 작용(예: 교대 근무를 끝낸 직원을 위한 출구,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을 위한 별도의 입구 지정)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예: 직원은 가능한 한 자주 작업장 근처에 있어야 함).
- 구내에 들어와야 하는 공급업자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한 공급업자만 제품을 배송하고 직원이 밀접 접촉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음 공급업체가 구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일회성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 실현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1) 건물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통행량을 관리하고 (2) 화재 안전 및 기타 해당 규정을 준수하면서 아래에 설명된 건강 선별검진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 인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선별검진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줄을 서서 검진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II. 장소

A. 주방 영역

-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책임 당사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방 시스템에 대한 사전 복귀 점검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직원이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6 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주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업무 교대(예: 음식 준비) 시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주방 직원이 교대 업무 내내 한 작업대(예: 샐러드 또는 그릴 또는 디저트)에서만 일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작업장과 작업 구역 바닥에 테이프로 표시하여 모든 방향으로 6 피트 거리두기를 알려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직원이 직접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지 않고 다음 사람이 픽업할 수 있도록 카운터에 물건을 놓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직원이 바뀔 때 주방 장비(예: 칼, 냄비, 행주/수건) 공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B.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작업장 활동에 필요한 PPE 외에,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입수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되는 해당 안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 필요하거나 공급업자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한 PPE 를 적절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얼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PPE 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 지침에 대해서는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 사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N95 마스크가 통상적으로 음식 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 소유의 추가 보호용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책임 당사자가 다른 방식으로 직원의 업무 특성상 직원에게 추가적인 보호용 PPE 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금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모든 해당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전직원이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손 위생을 수행하고 주 및 지역 위생법에 따라 맨손 장벽(bare hand barrier)을 사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비식품 준비 활동 중에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장갑을 자주 교체하도록 확인하십시오. 및
 - 작업을 전환할 때 직원이 장갑을 교체하도록 권장하십시오(예: 사전에 냅킨으로 말아 둔 실버웨어를 고객에게 제공).
 -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손을 자주 씻거나/씻고 소독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탁을 치우는 직원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있는 경우 식탁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후에 장갑을 교체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 한 경우에만 고객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나이가 2 세 미만이며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식탁에 착석하지 않을 때도(예: 픽업 대기, 카운터 또는 창에서 주문, 식탁으로/식탁에서 이동, 화장실 사용)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일단 착석한 후에는 식사 및/또는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도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권장해야 하지만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도구, 펜 및 패드, 그리고 문 손잡이, 키패드 및 터치스크린 등 공유 표면의 접촉 등 물체의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된 물체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촉할 때 직원에게 장갑(적절한 업무용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에게 접촉 전후에 손을 씻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PPE 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벗고, 세척하고(해당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 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날짜, 시간 및 청소 및 소독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대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월, 줄이 있는 쓰레기통.
 - 손 소독: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지역에 대해 6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밀접 접촉 구역(예: 외부 화장실)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구, 출구, 계산대 등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비접촉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가 상수도를 제공할 수 없는 푸드 트럭 및 매점에서 직원은 장갑을 착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손 소독을 하고 연방, 주 및 지역 식품 취급 및 위생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대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PPE 를 포함하여 더러워진 품목을 폐기할 수 있도록 현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배치하십시오.
- 테이크아웃/배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음식 및/또는 음료를 기다리는 고객을 위한 손 위생대를 제공함.
 - 직원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확인하십시오. 및
 - 픽업/배달을 실내/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경우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문 및/또는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용 비품을 제공하고 직원이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에 따라 이러한 표면의 사용 전후에 손 위생을 준수하여 이러한 비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영역과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대해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최소한 교대 후 매번,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DOH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횟수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간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화장실 사용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작업장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도구 세트에 이동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등재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 및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뉴욕주에 등재되고 EPA에 의해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세척 또는 소독 제품 또는 세척 및 소독 활동으로 인해 안전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기계류가 손상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손 소독대를 설치하고/하거나 충분한 일회용 장갑을 제공하고/하거나 해당 기계류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코로나 19에 대해 확진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최소한 통행량이 많은 모든 구역 및 밀접 접촉면(예: 공유 도구, 장비, 기계, 작업대, 키패드, 전화기)을 포함하여 해당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 푸드 트럭의 직원이 COVID-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되는 경우, 푸드 트럭은 청소 및 소독될 때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과 창을 여십시오.
 - 24시간이 지난 후 청소 및 소독을 하십시오. 24시간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 등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해당 구역을 적절히 청소하고 소독한 후에는 재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가 시설을 방문했거나 사용한 후 8일 이상 지났다면 추가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 간 음식 및 음료 공유를 금지하고, 점심을 집에서 가져오도록 권장하고, 직원이 식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직접 제공되는 모든 양념류가 일회용 용기 또는 정기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세척 및 소독하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님에게 일회용 종이 메뉴 제공 및/또는 가능한 경우 메뉴가 화이트 보드/칠판/TV/프로젝터에 표시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메뉴를 사용한 후 매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이 온라인(예: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전자 기기)에서 메뉴를 보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전 포장된 실버웨어 또는 사전에 냅킨으로 말아 둔 실버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버웨어를 사전에 말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포장되지 않은 빨대와 이쑤시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개 활동을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운영에 제공하기 위해 처음 재개할 때 직원의 근무 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직원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에서 발행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공급업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및 SNS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II. 진행

A. 선별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가능한 경우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일일 건강 선별 검사 관행을 구현해야 하지만, 그러한 선별 검사는 고객 및 배달 직원에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선별 검사는 직원이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격으로(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직원이 서로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별 검사를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과 공급업자에게 선별 검사가 필요하며 근로자 또는 직원 또는 공급업자가 다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자 또는 코로나 19 유증상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했음을 알고 있음.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음.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의 증상을 경험했음.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건강 선별 검사를 완료하거나 접촉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고객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접촉자 추적을 위해 일지에 기록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접촉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 또는 그 외의 시간을 포함하여 직원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 위에서 언급한 질문 사항에 대한 그들의 응답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 및 일시를 즉시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선별 검사 설문지 외에도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또는 DOH 지침에 따라 매일 온도 점검을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데이터(예: 온도 데이터) 기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온도 점검을 포함하여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현장에 들어가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및 공급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에 정통한 것으로 운영자가 식별한 개인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검사자는 최소한 안면 마스크를 포함하여 PPE 를 제공 받아 사용해야 하며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에서 코로나 19 증상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는 직원 또는 공급업자는 구내에 입장할 수 없으며, 평가 및 검사를 위해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하라는 지시와 함께 귀가시켜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양성 사례에 대해 현장이 소재하는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건강 관리 및 검사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가 확인된 후 또는 직원이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 프로토콜 및 정책에 대해 DOH 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검사 진행에 의해 수집된 모든 직원 및 공급업자의 답변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이 나중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을 겪고 있는지 통보할 수 있는 직원의 당사자로서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하여 책임을 지는 현장 안전 모니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작업 현장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공급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적절한 PPE 를 착용한 고객이나 비접촉식 수단을 통해 수행하는 배송은 제외합니다. 직원이 코로나 19 로 진단된 경우 모든 접촉자를

식별, 추적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일지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건강 선별 검사를 완료하거나 접촉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고객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B. 추적 조사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의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하여 책임을 지는 현장 안전 모니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 사업체에서 상호 작용한 직원, 공급업자 또는 고객이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일지에 기록된 모든 직원 및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시점 중 이른 시점부터 48 시간 전에 음식 서비스 장소에 입장한 방문객/고객(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현장이 소재한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연방법과 주법 및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역 보건부는 법적인 권한 하에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했다는 경고를 받고 추적 조사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되고 설명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안전 계획을 작성하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주와 운영자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ovel Coronavirus (COVID-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ronavirus (COVID-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